

## 1. 청약철회권

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청약과정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(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)

|           | 투자성상품  | 대출성상품   |
|-----------|--|---|
| 주체        | 일반금융소비자(전문금융소비자 불가)  |   |
| 대상상품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난도 단위형 펀드</li> <li>· 고난도 투자일임계약</li> <li>· 고난도 금전신탁계약</li> <li>· 비금전신탁계약</li> <li>* 파생결합증권은 대상 아님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</li> <li>· 신용용자</li> <li>· 신용대수</li> <li>· 증권담보용자</li> </ul> |
| 적용예외      | 청약철회기간 부여 없이 즉시 운용에 동의한 경우   | 반대매매 및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  |
| 철회가능기간    | 계약체결일(계약서류 제공일)로 부터 7일 이내  | 계약체결일(계약서류 제공일)로 부터 14일 이내  |
| 철회효과 발생시점 | 서면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  | 서면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및 대출금, 이자, 부대비용을 반환한 때   |
| 철회 효과     |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·재화 등을 반환  | 소비자로부터 금전·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·재화 등을 반환   |
|           |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|   |
| 신청방법      | '청약철회신청서' 접수(영업점 방문)<br>- 대리인신청 불가   |   |
| 시행일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21. 3. 25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</li> <li>· 2021. 5. 10 시행 : 고난도 금전신탁계약, 고난도 펀드,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</li> </ul>      |   |